

# 正祖代 『國朝寶鑑』 刊印의 운용실태 연구

The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Publication of *Gukjobogam*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김 정 미 (Kim, Joung-Mi)\*

## ◁ 목 차 ▷

- |                     |                    |
|---------------------|--------------------|
| 1. 서 언              | 3. 서적간행의 운용실태      |
| 2. 「국조보감」의 刊印방법과 일정 | 3.1 刊印工匠의 성격과 處遇   |
| 2.1 版種의 선택          | 3.2 刊印經費의 내역과 所用物品 |
| 2.2 관원 임명과 일정의 계획   | 4. 결 언             |
| 2.3 刊印의 진행과정        | <참고문헌>             |

## < 초 록 >

이 글에서는 의궤 기록을 통해 정조대 『국조보감』 간행과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국조보감』을 인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논의했던 사항 중 하나가 바로 版種으로, 木板開刊으로 결정되었는데 본편의 刻本은 正書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활자로 인출한 후 목판에 번각하였다. 또 『宣廟寶鑑』과 『肅廟寶鑑』은 영조대에 간행한 책을 그대로 割付翻刻하였으며 반사하지 않을 별편은 활자로 인출하였다.

둘째, 간행 전반의 진행과 감독을 담당할 감인청 인원으로서, 찬집에 직접 참여하여 이 책에 깊은 지식이 있는 관원을 차출하여 최종 당상 3인과 낭청 2명이 감인청 관원으로 임명되었다. 또 간인작업을 속히 완료시키기 위해 八道에 關을 보내 외방각수를 上京하도록 하였다.

셋째, 목판간인은 4월 29일부터 刻本 인출작업을 시작으로 각판작업은 144명의 각수가 참여한 가운데 2개월여 뒤인 7월 4일에 대부분 완료 되었다. 인출은 10명의 인출장이 10월 25일 경에 마무리 지어 11월 중으로 모든 간행 작업이 완료되었다.

넷째, 여기에 부역된 각수, 인출장, 수장제원, 균자장, 창준 등 19種 218명의 공장들은 하루 품삯 米 3升과 2錢을 받고 부역하였다. 가장 많은 수가 동원된 각수 144명 중 승각수 72명은 대부분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상경한 자들로, 禁僧法으로 인해 다른 장인들과 분리되어 성 밖 攄戎廳에서 작업하였다. 정조대 총 간인경비는 8만량 이상이며 이 중 10%의 금액이 印板 工役費로 소용되었다. 이 중 종이 구입비가 총 비용의 50%에 해당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22책 한 질의 原價로 冊紙 50卷과 蜜墨, 粧績費 5兩이 소요되었다.

要語: 國朝寶鑑, 正祖, 儀軌, 木板本, 活字本, 刻本, 工匠, 監印廳, 刊印過程, 刊印經費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원(mirekjm@hanmail.net)

접수일: 2009년 12월 6일 최초심사일: 2009년 12월 7일 심사완료일: 2009년 12월 14일

<ABSTRACT>

The study looks into the overall publication process of *Gukjobogam* during the reign of the King Jeongjo. To sum up the study, first, one of the most important topics discussed was the type of an edition which was finally decided to be printed from woodblocks. The base copy for pinting was first printed with movable types and then carved on woodblocks.

First, *Sunmyobogam*(1684) and *Sookmyobogam*(1730) pub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Youngjo(1694-1776) were used as a base copy to carve woodblocks, and the edited books about the historical works during the King *Sunjo*, and the extra contents which would not be distributed were printed with movable types.

Second, from the Government Printing Office three directors and two vice-directors who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compilation of these books and had much knowledge were appointed to supervise the overall progress of publication. Also in order to rapidly complete the project, officials were sent to all around the country to bring local carvers into the capital.

Third, carving of woodblocks began with the print of a base copy on April 29 and, with the work of 144 carvers, completed on July 4 a little after two months. Ten printers finished printing books around October 25, and the entire process of publication was complete during November.

Fourth, a total of 218 technicians with 19 different skills, including carvers, printers, typesetters, proofreaders, etc. worked with a daily wage of 5.74L of rice. Out of 144 carvers, the largest group of workers, there were 72 monk carvers mostly from *Gyungsangdo* and *Jeonllado*, and they worked at Chongyoongchung outside the capital, separate from other workers due to the rule of restraining the Buddhist monks.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the publication cost totaled more than 80,000 *ryang* (which equals the value of 2.4 million Kg of rice at that time). Of the total cost, 10% was spent for producing woodblocks, and it is assumed that about 50% was spent for buying papers. A set of 22 volumes cost 50 bundles of book paper and 5 *ryang*(=187.5g) for luxury Chinese ink and binding.

Key words: *Gukjobogam*, King *Jeongjo*, the royal family records of the national events, woodblock prints, movable type prints, base copy for carving books, Gamincheong, publication process, publication cost

## 1. 서 언

조선시대 왕실주도의 書籍刊印은 한국의 고인쇄문화사를 논의할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시의 수준 높은 인쇄문화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통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서적간인의 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서적의 刊印은 상설인쇄기구인 교서관 외에도 監印廳 등의 임시기구를 權設하여 운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 편찬된 系譜類, 政法類, 敎化書 등의 일부는 編刊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놓은 의궤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특히 여섯 왕대에 걸쳐 편찬된 「國朝寶鑑」은 정조대이후에 제작된 의궤가 모두 남아있다. 이 의궤는 찬집과 간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그 과정 전반을 기술하고 있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왕실 서적간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 글에서는 「국조보감」의 간행을 위하여 작성된 의궤자료를 바탕으로 그 간인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조보감」은 編年體 史書로서,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秘藏해두는 실록과는 달리 역대 왕의 聖德만을 기록하여 先朝를 揄揚함으로써 후세 嗣王에게 鑑戒가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sup>1)</sup> 「국조보감」을 처음 시도했던 왕은 세종이다. 세종은 「宋史」를 예람하다 「國史院」에서 正史인 「실록」을 撰進한 후 다시 祖宗의 큰 계획과 要政을 수집하여 「寶訓」을 편찬함으로써 近臣들의 강독에 대비했다'는 글을 보고 예문관 대제학 權躔, 집현전 대제학 鄭麟趾 등에게 太祖·太宗의 宏謀와 要政을 모아 兩朝寶鑑을 편찬하게 하였으나 완성시키지는 못하였다.<sup>2)</sup>

하지만 세조 3년(1475)에 修撰廳을 설치하고 申叔舟(1417~1475)와 權擘(1416~1465)에게 명하여 同王 4년 1월 太祖·太宗·世宗·文宗의 「국조보감」, 7권 3책을 편간하였다. 그 후 여러 임금이 편찬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肅宗 10년(1684) 李端夏(1625~1689)에 의해 「선조실록」을 간추려 편찬한 「宣廟寶鑑」,

1) 鄭亨愚, 「國朝寶鑑의 編撰經緯」, 「동방학지」, 33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2).

2) 「국조보감」, 總敍 1면.

10권 5책이 완성되었다. 뒤이어 영조 5년(1729) 편찬되지 않은 列朝의 보감을 모두 편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아 前 대제학 尹淳(1680~1741) 등에게 명하여 纂修廳을 설치한 후<sup>3)</sup> 同王 6년에 本編 15卷 7冊, 別編 1冊을 포함한 16권 8책의『肅廟寶鑑』을 완성하였다. 정조 5년(1781)에는 纂輯廳을 설치하여 폐위된 燕山君과 光海君을 제외한 13조 보감을 편찬하고 이미 완성된 6조 보감과 合編하여 同王 6년(1782)에 10권 5本編 68卷 22冊과 別編 7권 2책을 완성하였다. 이어서 현종 14년(1848)에 정조대를 전례로 正宗·純宗·翼宗의『國朝寶鑑』, 본편 14권 3책과 별편 1책을 續纂하여 본편 82권 26책, 별편 1책으로 편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순종 3년(1909) 憲宗·哲宗의『國朝寶鑑』, 본편 8편 2책을 속찬하여 모두 90권 28책의 巨帙로 완성하였다.

조선시대 여섯 차례에 걸쳐 완성된 『국조보감』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조보감> 해제』<sup>4)</sup>와 6朝에 걸쳐 편찬된 경위를 중심으로, 편찬 목적과 편찬에 이용된 자료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sup>5)</sup>가 있다. 그리고 현전하는 의례 기록을 통해 粧纁과 관련된 재료와 장인, 장황상태 등을 중심으로 봉안·진상 의례와 보존 체계를 서지학적으로 분석한 연구<sup>6)</sup>와 임시기구인 찬집청의 편찬과정을 다룬 연구<sup>7)</sup>가 있다.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국조보감』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이 책의 가치와 간행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규명하고 당시의 서적출판 문화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서적의 편찬과 장황 외에도 당시 간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왕의 태도와 영향력은 어떠했는지, 간행에 소요된 물력과 경비 등 간행의 전반적인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국조보감』 總敍 11~12면.

4) 李元淳, 『<국조보감>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0).

5) 鄭亨愚, “國朝寶鑑의 編撰經緯,” 『동방학지』, 33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2).

6) 趙啓榮, “조선왕실 봉안 서책의 장황과 보존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6: 『국조보감』의 구성체제와 장황에 들어가는 물목과 현황 등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어 이 글을 쓰는데 많은 참고를 하였다).

7) 金貞美, “朝鮮時代 撰集廳·纂修廳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학대학원, 2009).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역대 왕들이 이루지 못했던 19朝 寶鑑을 하나로 편간하였으며 그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현종대와 순종대의 前例가 된 정조대를 중심으로 「국조보감」의 간행 과정과 아울러, 함께 참여했던 관원과 장인, 물품과 경비 등 간행관련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조대 이후 「국조보감」을 편간한 후 이와 관련한 사항을 자세히 기록한 의례를 제작하였다. 하지만 영조대의 「肅廟寶鑑儀軌」는 현전하지 않고 정조·현종대의 「國朝寶鑑監印廳儀軌」와 순종대의 「國朝寶鑑監印所儀軌」<sup>8)</sup>가 전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정조대에 제작한 「國朝寶鑑監印廳儀軌」가 간행과정 기록이 가장 자세하여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 자료에서 부족한 기록은 현종·순종대의 의례기록으로 보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3대의 의례 기록을 비교하여 당시 이 책이 가지는 의미를 살피고 조선후기 왕실출판 문화의 한 단면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 2. 「국조보감」의 刊印방법과 일정

거질의 「弘齋全書」를 남긴 正祖(재위 1776~1800)는 수많은 서적을 저술하고 규장각의 뛰어난 학자들을 통해 御定書와 命撰書 등 많은 문헌을 편간하여 문예 부흥을 이루었다. 재위기간인 18세기 후반은 주자학 연구가 정점에 이르고 청으로부터 고증학이 도입되어 학문 정보가 풍부한 시기였다.<sup>9)</sup> 하지만 서학이 전래되면서 전통적 질서가 동요하고 주자학이 지도이념으로서 한계를 드러내는 가운데, 외래사상과 문화의 영향으로 전통 사상과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다.<sup>10)</sup> 그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奎章閣’이라는

8) 서울대학교 규장각편, 정조대 「國朝寶鑑監印廳儀軌」 영인본, 1997. 장서각 소장, 현종대 「國朝寶鑑監印廳儀軌」 필사본, 소장번호 K2-3686. 장서각 소장, 순조대 「國朝寶鑑監印所儀軌」 필사본, 소장번호 K2-3683.

9) 김문식, “정조대 경학문헌의 특징,” 『한국학보』 26집(일지사, 2000).

10) 유봉학, “정조시대 사상적 갈등과 문화의 추이,” 『泰東古典研究』 21집(2005).

문화정책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정책연구와 통치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초반기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10여 년이 지나면서부터 안정기에 접어들어 문화정치를 구체화시키기 시작<sup>11)</sup>하면서 많은 문화업적들을 이루어 냈다.

『국조보감』은 이러한 그의 문화정책의 초창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책이다. 또한 이미 편찬된 6조보감에서 빠진 13조보감을 한 질로 완성시켰으며 이로 인해 현종대와 순종대에 보감의 편찬체제와 간행방법의 典範이 되었다. 따라서 정조대의 간행과정을 자세히 분석한다면 『국조보감』의 전체적인 출판문화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간행과정에서 보인 정조의 관심과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2.1 版種의 선택

정조 5년 7월 13일 ‘英廟祖 寶鑑’의 찬집을 위해 아직 洗草하지 않은 『英祖實錄』 初見本을 抄出, 割付를 시작으로 다음 해인 同王 6년 4월 24일 19朝의 『국조보감』의 교정이 모두 완료되어 4월 26일 교정소에서 奎帙을 감인청에 봉안하게 됨으로써 찬집의 일정은 모두 끝나게 된다.<sup>12)</sup> 이에 따라 都監의 호칭이 纂輯廳에서 監印廳으로 바뀌고 이후 寶鑑의 모든 일 또한 監印廳에 이관되었다.<sup>13)</sup>

애초 찬집이 완료된 후 吉日인 5월 1일 午時에 찬집한 正草本을 進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刊本이 아닌 草本으로 進獻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開刊 후 儀註를 갖추어 거행할 것을 아뢰는 李福源의 주장에 따라 진헌은 刊印 후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간행의 일이 더욱 시급해지게 됨으로써 4월 25일 감인청의 감인당상과 낭청을 곧바로 差出할 것을 명하였다.<sup>14)</sup>

11) 정옥자, “정조의 사회통합사상,” 『한국학보』 24집(1998).

12) 김정미, 위의 논문, 104쪽.

13) 서울대학교 규장각편, 『국조보감』 감인청의례, 83쪽, 4월 26일. “今後 以寶監事 入啓文字 稱以監印廳事 分付.”

14) 위의 책, 83쪽, 4월 25일. “右議政 李福源 所啓…以事體論之 開刊後 當具儀註舉行 道理當

간인의 진행을 위해 감인당낭의 차출을 명한 후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版種의 선택과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판종은 간인의 진행을 위해 물력과 인력 등을 사전에 마련하고 계획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정되어야 할 기본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판종의 논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먼저 정조 6년 4월 25일, 정조가 물력을 마련해야 하는 戶曹判書 金華鎭과 領議政 徐命善, 右議政 李福源, 刑曹判書 徐有隣, 檢校直提學 鄭民始와 함께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 자리에서 版種은 이 책의 중요도, 간행의 간편함과 책을 廣布함에 있어서 활자보다는 목판이 적합하다<sup>15)</sup>는 의견과, 많은 비용의 폐를 줄이기 위해 활자로 하자<sup>16)</sup>는 의견, 비용 뿐 아니라 正書도 매우 어려우므로 활자 인출 후 翻刻하여 지방에 내려 보내자<sup>17)</sup>는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지방에 내려 보내면 폐를 끼치게 되고 冊本을 내려 보낼 때의 陪往凡節도 불편하므로 무조건 교서관에서 인출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물력이나 비용은 따지지 말고, 廣布를 위해서는 목판이 더 합당하므로 호조판서에게 감인당상 임명 후 다시 논의하여 정할 것을 명하였다.<sup>18)</sup>

그 다음날인 4월 26일, 감인청 당상인 鄭昌聖과 沈念祖가 참여한 가운데 다시 판종 결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정창성은 일의 중요도에 맞게 「列聖誌狀通紀」와 같이 활자로 인출하면 좋겠다는 영의정의 의견을 전하였다. 하지만 정조는 목판본인 「列聖御製」와 「국조보감」의 중요도가 같으므로 꼭

然矣 上曰 其言 誠有意見矣”, “福源曰 國朝寶鑑進獻 既有刊印後 舉行之命 刊印事役 一時爲急 監印堂郎 卽爲差出事 分付都監 何如 上曰 依爲之.”

15) 위의 책, 99~100쪽, 4월 25일. “金華鎭曰 活印與木刻 不甚相懸…且在重其事之道 以木刻印出 恐合宜矣”, “刑曹判書徐有隣曰 若爲廣布 則無如木刻.”

16) 『승정원일기』 정조 6년 4월 25일(신묘). “魯鎭曰 較其省弊 則以活字印出 宜矣.”

17) 서울대학교 규장각편, 앞의 책, 99~100쪽, 4월 25일. “領議政徐命善曰…計其工費 不啻倍蓰 且正書之役 亦甚爲難 今此印役 先以活字印出 以後翻刻 下送嶺營或箕營 限百本印出好矣.”

18) 上同. “上曰 戶判以木刻爲輕便 木刻非但輕便 若下送外方 則不無貽弊之慮 無論木板活字 當自本館印出 不必下送外方 且冊本下送之時 陪往凡節 亦多難便矣”, “上曰, 所重有在, 何論物力與工費乎 其爲廣布 則木板 勝於活字矣”, “上曰 監印堂上差出後 戶判與之較量事工 參定物力 可也.”

활자로 인쇄할 필요는 없다<sup>19)</sup>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심염조는 글씨를 잘 쓰는 寫字官의 인력부족으로 正書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글자체도 鑄字보다 못한 正書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sup>20)</sup> 뒤에 정조는 甲寅字의 落帙本에서 集字割付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 방법은 심염조가 제시한 正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판종은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국 목판으로 정해졌으나 刻本<sup>21)</sup>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4월 28일 한 번의 재조정이 있었다. 감인청에서 임금의 하교에 따라 甲寅字 落帙本에서 集字하여 목판에 割付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해당 글자를 찾는데 시간이 지나치게 허비될 뿐만 아니라 찾은 글자를 잘라 목판에 붙이기 위해 손으로 글자를 문지를 때마다 글자가 목판에서 탈락되어 工役이 활자인출에 비해 배가 걸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험 삼아 1張을 인출한 후 다시 飜刻<sup>22)</sup>해본 결과, 글자모양에 정조도 흡족해 하여 刻本으로 활자 1장을 인쇄한 후 목판에 붙여서 번각하도록 하였다.<sup>23)</sup>

本編이 廣布를 위해 목판으로 결정된 것과는 달리 別編은 『肅廟寶鑑』의 예에 따라 활자로 결정하였다. 별편은 영조때 『숙묘보감』을 찬수하면서 처음 구성된 것으로 『숙묘보감』의 편찬이 완료된 후 임금이 尊周大義를 실천한 내용만을 별도로 모아 엮은 책이다.<sup>24)</sup> 이러한 내용이 청나라에 유입될 경우 청나라와 심각한

19) 『승정원일기』 정조 6년 4월 26일(임진). “上曰 監印事 木板活字間 何以爲定乎 昌聖曰 若開刊 則工役似遲延 往議大臣 則以爲列聖誌狀 曾以活字印出 其在重事體之道 今番亦爲活印似好云矣.”

20) 서울대학교 규장각편, 앞의 책, 102쪽, 4월 26일. “念祖曰 若以木板活字 則當使寫字官正書而善寫者 不滿十餘人 一人所書 一日不過二三張 寫役似遲 而字樣 則大不如鑄字矣.”

21) 刻本은 刻字하기 위해 목판에 붙이는 底本으로, 板下本과 같은 개념의 용어이다. 儀軌에 冊本, 元冊子, 原本 刻本 등 다양한 용어가 쓰이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의미가 가장 상통하는 刻本으로 통일하였다.

22) 飜刻과 反刻은 같은 뜻으로, 원문에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쓰이고 있으나 이 논문에는 번각으로 통일하였다.

23) 위의 책, 정조 6년 4월 28일(갑오). “念祖曰 昨日依下教 以衛夫人鑄字落帙 集字割付 則不但搜覓之際 自費晷刻 字字割付於板上 以手磨去紙背 每致脫落 似難就緒 其工役之難 有倍於活字之印出…先爲活印一張 卽爲反刻似好 故先以活字 印出一張 卽爲反刻 則字樣果好 故敢此持入矣 上命進覽曰 字體果好 依此開刊 可也.”

외교적인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정조는 『懲愆錄』이 일본에 유입되었던 예를 들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별편은 반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sup>25)</sup>

이와 같이 『국조보감』을 인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논의했던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판종으로, 며칠간 여러 논의를 거친 후 木板開刊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본편의 刻本은 正書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활자로 인출한 후 목판에 번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 『宣廟寶鑑』과 『肅廟寶鑑』은 영조대에 간행한 책을 그대로 할부번각하기로 하였으며 이와는 달리 반사하지 않을 별편은 활자로 인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刻本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正書式과 活字印出式, 割付式이 있으며 할부식은 다시, 간행하고자 하는 책을 그대로 할부하는 것과 여러 책들에서 集字하여 할부하는 방식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 간단한 방법의 차례는 기존의 책을 할부하는 방식, 활자인출식, 정서식, 집자할부식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판종의 선택에 있어서 공역에 소요되는 경비보다 그 책의 인출 양 뿐만 아니라 그 책이 지니는 중요도나 성격, 일의 합리성 등에 따라 판종과 방법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前朝의 세 寶鑑이 모두 활자본인 前例와는 달리 木板으로 제작하여 繼述의 뜻을 후세에 오래도록 전하고자 했던 정조의 바람이 판종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sup>26)</sup>

24) 영조 5년 11월 2일 『속묘보감』의 편성이 완료된 후 책 내용에 명을 사대한 절의를 기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미 찬수된 책을 다시 편성하기 어려움에 따라 그 대안으로 만든 것이 별편이다. 정조 때 이를 전례로 仁祖朝부터 별편을 편성하게 되었다.

25) 서울대학교 규장각편, 앞의 책, 104쪽. “念祖曰 別編不當頒賜 依肅廟寶鑑例 以鑄字印出 似好矣 上曰 所奏甚可 依此爲之”, 108쪽. 4월 30일 “昌成曰 別編 當只印內入件矣 上曰 今雖昇平日久 邦域無事 而萬一有生頗之端 則誠甚爲難 故別編已令勿爲刊布 而壬辰後 懲愆錄 亦入倭中云 春秋大義 彼國 亦豈不聞耶.”

26) 『국조보감』 『總敍』, “上以三寶鑑印出 皆用活字 則以活字印全書 是亦繼述之義 然活字僅印若干紙 旋即毀撤 終非壽傳之道也 乃命以活字先印一本 以此一本鑄刻於梓木 使繼述之義壽傳之道 並行不悖…”, 『승정원일기』, 정조 6년 4월 26일(임진) “昌聖曰 論其所重 寶鑑與御製等 然則以開刊爲定宜矣.” 등.

## 2.2 관원 임명과 일정의 계획

監印廳은 서적의 인출관련 사항의 결정과 인출과정을 감독하는 것에서부터 내용의 교정과 책의 장황, 진상과 봉안에 이르기까지의 마지막 공정을 모두 주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궤를 편간하는 업무까지 담당하였으므로 감인청의 관원은 그 책의 내용과 성격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 책 간행의 제반 사항까지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야 했다. 특히 都廳郎廳은 모든 간행업무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더욱 중요한 자리였다. 따라서 「국조보감」 감인청의 관원은 이 책의 편찬에 참여했던 纂輯廳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差出하였다.

감인청에서 간행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담당할 감인청 堂郎의 임명이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감인당낭의 차출을 명한 날인 4월 25일, 實錄廳의 堂上과 郎廳이 각 2인인 前例를 기준으로 하여 먼저 감인당상에는 漢城府判尹 鄭昌聖과 奎章閣直提學 沈念祖를, 都廳郎廳에는 副司果 趙城鎭이 선출되었다.<sup>27)</sup> 이 후 당상으로 호조판서인 李性源을<sup>28)</sup>, 낭청으로 校書館校理 成大中을 추가로 임명하였다. 하지만 이성원과 논의한 사항을 살펴볼 때, 감인의 역보다는 進書 및 親上 등의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加差한 것으로 보이며 성대중은 의궤의 인출을 감독하였다.

감인청 당상으로 뽑힌 정창성은 成宗朝 보감을 찬집하여 加資된 인물이다. 심염조는 정조 1년에 「明義錄」 찬집할 때 낭청으로 참여하였으며 「국조보감」 찬집당상에 임명되었으나 근무일수가 적어 半熟馬 1匹을 賜給받았었다. 도청낭청에 임명된 조성진 또한 보감을 찬집할 때 도청낭청을 맡아 정종 등 6朝의 보감

27) 서울대규장각편, 앞의 책, 100~101쪽, 4월 25일. “福源曰 監印堂郎 當出幾人乎 上曰 實錄廳 前例 何如 福源曰 堂郎各二人矣 上曰 郎廳 誰當爲之乎 福源曰 以前任都廳郎廳中 差出好矣” 以校正郎廳 以大臣意啓曰 國朝寶鑑監印堂郎 卽差出事 命下矣 堂上 漢城府判尹鄭昌聖 奎章閣直提學沈念祖 都廳郎廳 副司果趙城鎭 差下 使之着意察任 何如 傳曰 允.”

28) 「승정원일기」 정조 6년 8월 2일(병인). “上曰 今所印出 爲幾件乎 昌聖曰 二十件已爲完印 而箋文姑未入印矣”, 8월 11일(을해). “印役 今至何境乎 昌聖曰 監印今幾完役 而箋文姑未入印矣.” 129~130쪽. 10월 25일 “傳曰 國朝寶鑑印役 今幾告成 進書日字 太廟親上日字 令該曹 以來月念晦間推擇以入 戶曹判書李性源 監印堂上差下事 榻前下教.”

을 교정하고 ‘영묘조 보감’을 찬집하여 加資된 인물이다. 간행이 끝난 후에는 施賞으로 감인총재대신인 김상철은 鞍具馬 1匹을 賜給하고 감인청당상인 정창성과 심염조, 이성원 및 도청낭청 조성진은 모두 加資되었으며 감동낭청인 성대중은 종 5품관인 교서관교리에서 守丞으로 除授되었다.

『국조보감』이 목판간인으로 정해짐으로써 여기에 필요한 각수 등의 인력 구성과 물력, 경비 등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목판간인의 과정에서 刻板은 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으로서 보통 각수 한 사람이 한 板<sup>29)</sup>을 새기는데 3일정도가 소요되었다. 이에 반해 印出은 하루에 25張 이상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판각을 담당하는 刻手의 多少에 따라 일정의 遲速이 결정된다.<sup>30)</sup> 따라서 활자로 간인할 別편을 제외한 『국조보감』 본편 1,700餘張을 새기기 위해서는 기본 50명 이상의 각수가 필요하다.<sup>31)</sup> 하지만 서울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각수는 20여명에 불과하며<sup>32)</sup> 이 인원으로 板刻을 완료하기까지는 대략 9개월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올해 안으로 『국조보감』을 進書하고자 한 정조의 뜻에 부합하고 날이 추워지기 전에 모든 역을 마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각수를 동원하여 판각을 신속히 끝내야 했다. 이를 위해 감인청에서는 각 지방에 關을 보내 지방에 산재해 있는 각수들을 동원시켜 부족한 각수의 인력을 충당하여 8월 안에 간인작업을 완료시키고자 하였다.<sup>33)</sup> 이 밖에 간인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5월 1일 始役에 맞추어

29) 板과 立은 冊版의 수량으로 판은 張과 같은 단위지만 立은 板과는 수량이 달랐던 것으로 추측되나 재고가 필요하다.

30) 서울대학교 규장각편, 앞의 책, 103쪽, 4월 26일. “上曰 一日印出 當爲幾張乎 念祖曰 實錄每以三十張印出 今此印役 亦似小不下二十五張矣”, 113쪽, 5월 25일. “上曰 寶鑑先印者 爲先自內閣入之 而所刻今爲幾板乎 鄭昌聖曰 板刻甚難 一人所刻 三日爲一板矣”, 102쪽, 4월 26일. “昌聖曰 較其刻役 一人所刻 三日當爲一板 論其設役遲速 則專在於匠手多寡矣.”

31) 위의 책, 100쪽, 4월 25일. “華鎮曰 若開木板 則刻手 當以五十人 爲定矣 刑曹判書徐有隣曰…刻手五十人 似不可減定矣.”

32) 위의 책, 107쪽, 4월 30일. “鄭昌聖曰 明當始役…京中刻手 爲二十人矣.”

33) 위의 책, 102쪽, 4월 26일. “念祖曰 在京人太甚不足 以兩南兩西諸處所在人 發關上來宜矣 上曰 在外刻手 使之上來 則果能無弊乎 念祖曰 別無爲弊矣,” 108쪽. 4월 30일 “上曰 八月內 可以訖工乎 昌聖曰 若多得刻手 則雖八月前 亦可訖工矣.”

교서관으로 보낼 것을 해당 관서에 甘結과 關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sup>34)</sup> 간인에 들어갈 종이를 마련하기 위해 임금의 명에 따라 간행건수를 정하였다.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간행 전반의 진행과 감독을 담당할 감인청 인원으로, 찬집에 직접 참여하여 이 책에 깊은 지식이 있는 관원을 차출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加差하여 최종 당상 3인과 낭청 2명이 감인청 관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임무가 끝난 후 기여도에 따라 시상이 이루어졌는데 내역은 찬집청과 동일하였으며, 간인 일정과 공장인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장들의 일의 속도와 처리해야 할 양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간인의 일정을 좌우하는 것은 작업이 가장 더디고 까다로운 각판으로서 각수의 인원을 최대한 동원시키기 위해 八道에 關을 보내 정해진 각수를 上京하도록 하였다. 또 간인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기 위해 該曹에 甘結을 보내 요청한 목록대로 조달하게 하였으며 간인 건수는 모두 임금의 명에 의해 결정되었다.

## 2.3 刊印의 진행과정

이로써 간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임금의 명에 따라 5월 1일 공식적으로 校書館에 감인청을 설치하여 刊印을 시작하였다.<sup>35)</sup> 하지만 그 전인 4월 29일부터 애초 계획대로 먼저 ‘영묘조 보감’ 刻本の 활자 인출 작업이 진행되었다.<sup>36)</sup>

開局 후 4일이 지난 후에도 지방의 각수들이 도착하지 않아 서울에 있는 각수 18여명만이 刻板에 부역되어 모두 35板을 간인하였다. 감인청에서는 간인과 함께 溫陵과 己卯土禍에 대해 원문의 침입여부를 교정당상과 상의<sup>37)</sup>하는 등 내용

34) 위의 책, 267~279. 「監印廳移文」, 「監印廳 甘結秩」.

35) 위의 책, 130쪽, 4월 26일. “上曰 始役之日 以進書所定初一日開局 好矣”, 105쪽. 4월 29일 “監印廳郎廳 以大臣意啓曰 今此國朝寶鑑監印之役 依列聖御製例 以木板入刻 而自來月初一日 始役之意 敢啓 傳曰 知道.”

36) 위의 책, 269쪽, 壬寅 4월. 「戶兵曹」, 109쪽, 5월 초4일. “上曰 先以活字始役乎 昌聖曰 果以活字先印 仍爲翻刻矣 上曰 先刊何朝寶鑑乎 昌聖曰 先自英廟朝寶鑑開印役矣.”

37) 위의 책, 113쪽, 5월 25일. “上曰 隨仁隨刊乎 昌聖曰 然矣”, “昌聖曰 寶鑑印役 今者所印

의 교감과 체제도 아울러 논의하였으며 첫 1編의 간인이 완료된 후에는 임금에게 인출상태를 점검받았다.<sup>38)</sup>

5월 9일, 지방에서 가장 먼저 黃海道 각수 10명이 上京하였는데 그 중 僧刻手 2명이 포함되어 있어 승각수의 작업장을 성 밖 摠戎廳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冊本을 총용청으로 옮기는 것을 논의하던 중 교서관에 설치된 감인청을 장소가 넓고 水石이 淸冷하고 搗硃하기 좋은 造紙署로 옮기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조지서는 인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정조의 뜻으로 무산되었다.<sup>39)</sup> 도침은 장황을 할 때 서책의 두께를 줄이고 질기고 평활한 지면을 만들기 위해 거치는 과정<sup>40)</sup>으로 이를 통해 감인청인 교서관에서 인출과 장황이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황해도 각수를 시작으로 5월 25일에는 각 지방에서 70여명의 각수들이 상경하였고 6월 8일에는 120여명이 넘는 각수가 참여함에 따라 前朝에 편간된 「宣廟寶鑑」과 「肅廟寶鑑」을 金尙喆과 徐命膺의 家藏冊으로 割付한 뒤 翻刻하는 등 간인작업이 신속히 진행되었다.<sup>41)</sup> 刻板을 시작한지 두 달 여만인 7월 4일에는 刻板 작업이 거의 완료되어 지방의 각수 120명을 모두 내려 보내고 서울의 각수의 인원을 줄여가면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때 進上件 한 帙의 인출도 함께 완료되었다.<sup>42)</sup>

爲三十五板矣 領府事以爲 中廟朝寶鑑中 溫陵事 己卯事之入錄 未知其必如何云 故往復於校正堂上 則奉朝賀以爲不可 何以爲之乎 上曰 此係公議所在 從好爲之 可也 昌聖曰 別編 旣非廣布之件 跋文 當入錄於原編之末矣 上曰 此則然矣 刻手爲幾人乎 昌聖曰 自京求得者 只爲十八人 而三人則觀象監爲刊曆 還爲招去 故只以十五人付役矣.”

38) 위의 책, 111쪽, 5월 초9일. “上曰 監印之役 今至何境耶 念祖曰 數日後 則當印出一編 看品次 當爲封進矣.”

39) 上同. “昌聖曰 海西刻手十名 今始上來, 其中有僧刻手二人 許入城中與否 何以爲之乎 上曰 此則出付摠戎廳 使之留接刊役 可矣 昌聖曰 若付摠廳 則冊本往來時 儀節多有難便之端矣…命善曰 然則僧手上來後 付諸摠廳 在外開刻 上曰 造紙署廳舍甚廣 監印廳移往開局 則搗硃亦甚便好矣 命善曰 果好矣 廳舍之廣闊 水石之淸冷 勝於校書館矣 上曰 雖甚便好 第印役爲難 難以出去矣.”

40) 조계영, “조선후기 왕실서책 장황시의 도침에 관한 고찰,” 『고문서연구』(2007).

41) 서울대학교 규장각편, 앞의 책, 112~113, 5월 25일. “上曰 刻手來到之數 幾何 昌聖曰 七十餘名矣…上曰 幾月則役可告訖乎 昌聖曰 役之三月 庶可告訖矣…而領府事及徐命膺家 適有舊印冊子 故覓來先爲割付翻刻矣”, 6월 초1일. “上曰 何當告成乎 華鎮曰 工匠付役 今至一百十餘人 來月間當畢役矣.”

각관이 대략 완료된 지 40일여 후인 8월 11일에는 인출작업이 완료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箋文 등의 글이 완성되지 못하여 10월 25일경에서야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箋文과 序文, 座目 등을 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8월 2일에 奉安件의 표지에 제목을 書寫한 후 10월 26일에는 粧橫까지 진행한 것<sup>43)</sup>으로 볼 때, 봉안책자에는 本編과 別編 외에 다른 글들은 편입시키지 않은 듯하다.<sup>44)</sup>

간인 작업이 한창인 6월간에 箋文과 跋文, 凡例 등의 作文과 編成體制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箋文은 처음 提學인 李命植이 作成하여 인출본을 어람하였는데 원임대신 등과 상의하여 다시 지을 것을 명하였다.<sup>45)</sup> 跋文은 金鍾秀에게 짓도록 하였으나 완성된 문장 중 문제 되는 글귀가 있어 문형과 상의 후 삭제하도록 하였다.<sup>46)</sup> 감인청에서는 날씨가 추워지면 공역이 힘들어지므로 그 전에 간인을 신속히 끝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謄本이 수정되지 않아 간인일정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지방에 있는 김종수를 從重推考하고 金鑑 구절만 수정하도록 명하여 10월 7일경에 비로소 跋文을 간인할 수 있었다.<sup>47)</sup>

『국조보감』의 編成體裁에 대해서는 간인 중인 7월 4일에 비로소 논의가 시작되었다. 먼저, 여기에 참여한 당상과 낭청의 座目과 범례 등은 前朝에 편찬한 보감들과 섞이지 않도록 『詩傳彙編』의 예에 따라 별도로 한 권을 완성시키되,

42) 위의 책, 115쪽, 7월 초4일. “鄭昌聖曰 刻役今幾垂訖 故鄉刻手 盡爲下送 在京人 亦次第減下矣 上曰 有完印之件乎 昌盛曰 進上件一帙 已爲完印…”

43) 서울대규장각편, 앞의 책, 130쪽, 10월 25일. “上曰 寶鑑奉安件 今方粧橫乎 性源曰 自明日當爲始役矣”, 『승정원일기』, 정조 6년 8월 2일(병인) “昌聖曰, 二十件已爲完印 而箋文姑未入印矣 奉安件 當以國朝寶鑑書之乎 上曰 然矣.”

44) 현재 장서각에 소장된 31冊의 책자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5) 위의 책, 126쪽, 10월 7일. “上曰 寶鑑卽萬世傳後之書 而所撰箋文 多有疵病處 領府事與左相 往復相議 構成一草 可也 福源曰 既有時任文衡 使之撰出好矣 上曰 左相亦是原任文衡 卿其主之 與諸文任 亦相議爲之 可也” 10월 25일 “上曰 寶鑑今幾告成 箋文撰進一時爲急 左相既承筵教 不必更爲傳教 原任文衡 相議爲之 而左相總其事 可也.”

46) 위의 책, 119쪽, 7월 15일. “命膺曰 金鍾秀所製跋文中 以唐太宗之以古爲鑑 明皇之千秋金鑑 取而爲此者 事面極涉未安 今此寶鑑 殆與鑑古之鑑有異 此句節 往復文衡 使之刪拔, 宜矣 上曰 若或誤看 則難以寶鑑看之 易致妄發矣…上曰 此句節 言送文衡 以爲拔之 無妨矣.”

47) 위의 책, 121쪽 8월 초10일, 122~123쪽 8월 25일, 123쪽 9월 15일, 『승정원일기』 정조 6년 10월 7일(경오), “李世奭啓曰…問于監印廳則以爲, 跋文皆已刊印…”

編刊諸臣의 職과 姓名은 「明史」에 따라 鑑定할 것을 命하였다.<sup>48)</sup> 이를 통해 전문과 발문 등의 문장과 편찬체계를 정함에 있어 근엄한 史書의 체모를 갖추기 위해 정조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였는지 알 수 있다.

序文은 이 책의 중대함에 맞추어 정조가 친히 御製序文을 지었는데 10월 25일에 작성하여 서명응에게 살피도록 하였으며 다음 날, 대신들과 교정당상 등에게 흠이 있는 곳에 다시 加點하여 고칠 것을 명하였다.<sup>49)</sup> 이 어제서문은 처음 聖敎序를 集字하여 간행하고자 하였으나 御製에 集字를 쓰는 것은 事體에 맞지 않다는 鄭昌聖의 지적에 따라 다시 左副承旨 鄭志儉에게 書寫하여 간행하도록 하였다.<sup>50)</sup>

이로써 보감의 간행이 완료되어 정조는 10월 26일부터 抄啓文臣으로 하여금 印出本을 考校하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誤字와 의심나는 부분이 발견되어 이를 釐正하기 위해 고교낭청에게 春秋兼銜을 내려 실록을 謄出하게 하였다.<sup>51)</sup> 고교를 시작한 다음 날 첫 1권에 잘못 인출된 2字가 확인되어 왕명에 따라 종묘봉안건은 誤字부분을 칼로 도려내는 방법을 쓰지 않고 1장을 다시 고쳐서 인출하여<sup>52)</sup> 體貌를 갖췄다. 고교 5일째인 11월 1일 마침내 모든 고교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낭청의 춘추 직함을 감하하였다.<sup>53)</sup> 이것으로 6개월간에 걸쳐 본편의 봉안건과 진상건 및 반사건 136여건과 별편 18건<sup>54)</sup>의 간인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이 후 「국조보감」의 冊板은 교서관에 위치한 3間的 높은 樓에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sup>55)</sup>

「국조보감」의 모든 간행업무가 마무리 된 후인 11월 23일 정조는 대신이 주관

48) 위의 책, 116~117쪽, 7월 14일. 118~119쪽, 7월 15일.

49) 위의 책, 125쪽, 10월 20일. 132쪽, 10월 26일.

50) 위의 책, 142쪽, 11월 14일. “左副承旨鄭志儉 入侍時…上曰昨筵 鄭昌聖以爲 御製之用集字事體 頗苟簡云 其言 誠是矣 果有使爾書之之敎 善爲書出 可也.”

51) 위의 책, 134쪽, 10월 26일. “傳曰 印本考校之役 纔已始爲 而或有誤字 或有疑晦處 勢將就實錄中 謄出釐正 考校諸郎 並付春秋兼銜 待竣事減下事分付.”

52) 위의 책, 135쪽, 10월 27일. “上曰 一日所考 爲幾卷乎 仁浩曰 只考一卷 而一卷中 已有二字誤印矣 上曰 宗廟奉安件誤字 勿爲刀割 專一張改印事分付.”

53) 위의 책, 138쪽, 11월 초1일. “監印廳郎廳 以摠裁大臣意 啓曰 國朝寶鑑考校之役 今已訖工 諸郎廳所帶春秋之銜 減下 何如 傳曰 允.”

54) 이 인출건수는 기록상의 건수를 종합한 것이므로 실제 인출건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55) 위의 책, 113쪽, 5월 25일. “上曰 所刊寶鑑板 其將奉安於下處乎 昌聖曰 本館有三間高樓 可以奉安矣.”

하에 감인당상인 정창성과 도청낭청인 조성진으로 하여금 의궤의 편간을 명하면서 국초 보감의 시작의 사실에서부터 이번 續纂의 일까지 모두 상세히 기록하고 찬집 등의 모든 인원의 職과 성명을 일일이 쓸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여기에 또 「국조보감」 의궤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몇 년 전부터 의궤는 內入하지 않는다는 定例를 깨고 특별히 1건을 내입하고 내각과 외각, 4곳의 사고와 의정부, 춘추관에도 각 1건씩 보관하게 하였다.<sup>56)</sup> 이 책에 대한 정조의 각별한 애정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정조의 의궤 편찬 지시에 따라 의궤 내용을 出草하고 다시 찬집관련 내용을 「승정원일기」에서 考出한 후 다음 해인 3월 19일 의궤의 수정을 마지막으로 의궤의 인출을 모두 마무리를 지어 내입건은 상하 2권으로 작성하고, 그 외 보관처에는 1권으로 만들어 종묘와 예조 등에 각 1건씩 분상하였다.<sup>57)</sup>

목판간인 과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목판간인을 위하여 4월 29일부터 ‘영묘조보감’ 刻本 인출작업을 시작하였다. 각판작업은 서울 각수 18명이 5월 1일부터 작업하였으며 열흘 뒤인 5월 9일 황해도 각수 10명을 시작으로 한 달 안에 100여 명의 지방각수들이 상경하여 동시에 120명이 넘는 각수가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1,700장이 넘는 각판작업이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작업이 시작된 지 두 달 뒤인 7월 4일에 마무리단계에 이르러 지방각수를 모두 내려 보내고 서울 각수의 인원을 줄여가면서 작업을 완료시켰다.

인출은 10명의 인출장이 각각 하루 25장 이상을 인출함에 따라 빠르게 진행되어 시작한지 70여일 뒤인 8월 11일 작업이 대략 완료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56) 위의 책, 145~146쪽, 11월 23일. “傳曰 寶鑑編輯 不可無儀軌 而近來各都監儀軌 義例雜糅 全不成冊子貌樣 今番則大臣主管 仍令堂上鄭昌聖 都廳趙城鎮 專意編摩 自國初寶鑑創始時事實 至于今番續纂之舉 而詳細載錄 無或遺漏 纂輯校正監印參證考校 及御製校正御製書進人員職姓名 亦皆一一書之事 分付 儀軌例有內入件 而自年前定式 使之勿爲內入矣 此儀軌 事有稍異 一件內入事 一體分付 內閣外閣四處史庫儀政府春秋館 各藏一件 亦爲分付.”

57) 위의 책, 148쪽, 癸卯 3월 19일. “監印儀軌廳郎廳 以總裁大臣意 啓曰 國朝寶鑑儀軌 今已畢修正 內入件 分作上下二卷以入 而內閣外閣四處史庫議政府春秋館 合作一卷 各一卷 依下教分上 宗廟禮曹 各一件 依例分上之意 敢啓 傳曰 知道.”

箋文과 跋文 등의 作文이 지체되면서 10월 25일 경에야 마무리단계에 이르렀다. 6월 중에 작문자가 정해진 전문과 발문 등의 작문이 늦어진 이유는 작문자의 遲進에 있었으나 근엄한 史書의 체재를 갖추기 위한 정조의 까다로운 심사로 인해 작성자를 다시 바꾸거나 내용을 수정하게 하여 글의 완전성을 기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간행 이외에 내용의 교정과 편성체재의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그 중심에 늘 정조가 있었다. 내용과 글자에 대한 교감은 모든 인출이 마무리될 즈음인 10월 26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 글자 오류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 실록을 등출하게 하고 誤字부분은 다시 고치도록 하였다. 또 간행이 완료된 후 체모를 잘 갖춘 의궤를 제작하게 하여 다시 한 번 이 책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 3. 서적간행의 운용실태

#### 3.1 刊印 工匠의 성격과 處遇

##### 3.1.1 공장의 성격 및 종류

목판은 인출 후 판에 조립된 글자를 해체하는 활자와는 달리 글자가 새겨진 판을 영구히 전할 수 있으며 많은 양을 인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각수가 일일이 한 자씩 새겨야 하는 수고로움으로 많은 공력이 필요하다. 목판으로 책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행할 책의 내용을 正書하거나 활자로 인출하여 刻本을 만든 후 다시 목판에 붙여 새겨내서 인출하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 중 특히 판각이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刻手가 1장을 새기기 위해서는 3일이 걸리는 까다로운 작업이다. 하지만 「국조보감」은 75권의 巨帙임에도 불구하고 刻板과 인출에 들어간 실질적인 기간은 대략 3개 여월이 걸렸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간인을 완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각수가 동원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수를 중심으로 「국조보감」의 간인작업에 참여하였던 工匠의 종류와 활동양상 및 그들의 處遇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刻手는 일반적으로 목판에 글씨나 문양을 새기는 사람으로서 재료에 따라 돌에 새기는 石刻匠과 구별되며 기능에 따라 雕刻匠과 除刻匠, 木手 등과도 구별되는 명칭이다. 조선시대 문헌에 각수는 때로 玉冊이나 碑石 등의 석재에도 글씨를 새기는 임무를 맡았다는 기록이 나타난다.<sup>58)</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석각장은 木刻하지 못하였으며 같은 나무를 다루는 조각장이나 제각장이라 하더라도 刻字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sup>59)</sup> 따라서 刻字는 조각이나 제각 등의 기술보다는 더 전문적인 영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듯이 1,700여장의 많은 판을 빠른 시간에 새기기에는 서울의 각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각수가 가장 많은 영남 등 지방의 각수를 동원하고자 지방별로 각수의 수를 정하여 摠戎廳과 八道 및 兩都에 關을 보내 僧俗에 관계없이 匠案에 등록된 각수를 서울로 올려 보내도록 하였다.<sup>60)</sup>

이에 대한 각 지방의 牒報를 통해 상경한 각수의 인원을 살펴보면, 江華府는 원래 각수가 없기 때문에 동원시키지 못하였으며 摠戎廳도 각수 1~2사람이 있었으나 이미 도망가서 남아있는 자가 없었다. 개성부 역시 1~2사람이 업으로 삼았으나 몇 년 전에 모두 죽었고 匠案에는 본래 등록된 각수가 없기 때문에 올려 보내지 못하였다.<sup>61)</sup> 黃海道는 요구한 수 10명을 色吏가 거느리고 상경하였으며 평안도는 도내에 각수가 본래 적어 15명은 채우지 못하고 10명만 올려 보냈다. 각수 수가 가장 많은 경상도의 경우, 俗刻手 35명과 僧刻手 50명인 85명을 요구했으나 장안에 등록된 俗刻手는 없으며 僧刻手도 원래 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30명만 올려 보냈다.

하지만 실제 의궤에 실린 참여 각수의 명단을 살펴보면, 경상도의 경우 승각수

58) 김상호, “朝鮮時代 刻手の 石刻 活動考,” 『서지학연구』 41집(2008).

59) 서울대학교 편, 위의 책, 107쪽, 4월 30일. “上曰 石刻匠 何不用之乎 昌聖曰 石刻匠 不能爲 木刻云矣 上曰 除刻匠雕刻匠 不能刻之乎 昌聖曰 除刻雕刻匠人 皆自言不能刻字 無以強 迫矣.”

60) 위의 책, 267, 『監印廳移文』.

61) 위의 책, 271~273, 『監印廳移文』.

39명, 속각수 7명으로 모두 46명이 부역하였고 전라도는 승각수 24명, 속각수 18명으로 모두 42명, 홍충도는 속각수 2명, 평안도는 승각수 5명, 속각수 15명으로 모두 20명이 부역하였다. 또 황해도는 승각수 2명과 속각수 6명으로 모두 8명이며 강원도는 승각수 2명이 부역하여 황해도와 경상도의 경우 牒報 인원수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62)</sup> 이 여섯 道 중 가장 많은 각수를 보내온 곳은 경상도로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각수가 산재해 있으나 이 중 승각수만을 匠案에 등록시켜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校書館 소속 각수 10명과 서울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한 私手 14명을 포함한 144명이 刻板 제작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서울의 사수 14명 중 2명이 3년 뒤에 간행된 「宮園儀」의 印役に 부역된 교서관소속 각수로<sup>63)</sup> 활동했다. 이로써 국가소속 각수 등의 장인을 필요로 할 때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숙련된 장인을 우선적으로 뽑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각수의 소속과 인원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국조보감」 각수 인원

소속	俗刻手	僧刻手	합계
校書館	10	-	10
京私手	14	-	14
慶尙道	7	39	46
全羅道	18	24	42
平安道	15	5	20
黃海道	6	2	8
洪忠道	2	-	2
江原道	-	2	2
	72	72	144

62) 위의 책, 111쪽 5월 초9일의 기록을 보더라도 황해도 각수는 모두 10명이었으나 이 글에서는 「工匠秩」의 기록을 따르기로 한다.

63) 조계영, “朝鮮後期 「宮園儀」의 刊印과 粧纈,” 『서지학연구』 35집(2006. 12). ‘<표 7> 1785년 「궁원의」 인역시 부역 원역과 공장’ 명단.

刻板 작업은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지방의 각수들은 5월 9일 황해도 각수 10여명을 시작으로 상경하였다. 그런데 승려의 入城을 금하는 禁僧法<sup>64)</sup>으로 인해 황해도 각수 중 僧刻手 2명의 작업장소가 문제 되었다. 처음 승각수의 작업장에 관한 논의 때에는 성 밖 총융청의 平倉에 머물면서 작업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결정은 軍營인 총융청이 장소가 넓고 머물면서 작업할 수 있는 제반시설 뿐 아니라 각수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감인청이 설치된 교서관은 성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별도로 성 밖에서 작업하게 되면 목판본을 주고받을 때의 과정에 불편한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승각수를 그냥 고향으로 내려 보내자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각본 인출과 각판, 장황에 이르는 모든 간행 과정이 교서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각판을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시킬 경우, 이에 따르는 창준 등의 파견과 확인 절차와 감독 등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많은 각수를 동원시킨 경상도와 전라도는 각수의 대부분이 승각수들 이므로 이들을 내려 보내면 각판 작업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잠시 禁僧法을 해제시키고 성 안으로 들어가 작업하게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금승법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높아 처음 논의대로 총융사에 머물면서 작업하게 하였다.

간행장소인 교서관과 승각수의 작업장이 분리됨에 따라 각판 작업을 감독할 堂郎과 唱准이 총융청에 파견되지 않더라도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刻本을 다시 상세히 釐正하여 목판에 붙여서 내보내기로 하고 각수들을 감독할 將校를 선발할 것을 총융청에 關을 보내 협조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속각수 72명은 교서관에서, 승각수 72명은 총융청 평창에 머물면서 작업함에 따라 많은 수의 장인들을 모두 교서관에 수용할 수 있었다.<sup>65)</sup>

64) 僧尼의 도청출입을 금하는 禁僧法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세종조 이전에 立法되었으며 이 후 상황에 따라 폐지와 재입법을 반복하여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조 16년 다시 금승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영조가 不許하였다가 영조 25년 사간원의 요청으로 僧禁法을 시행토록 하였다.

65) 서울대학교 편, 위의 책, 5월 초4일, 110쪽. “鄭民始曰 印役雖重 僧徒不可使之入城 留置於摠戎廳 自外刻納 則好矣 上曰 卿言誠是…昌聖曰 莫重冊役 不可專委之於渠輩之手 堂郎問一員出去監董然後 可以開役矣 命善曰 原本詳加釐正 使之出送 則雖無堂郎 可以開刻

앞에서 살폈듯이 「선묘보감」과 「숙묘보감」은 金尙喆과 徐命膺이 보관하고 있던 前朝에 인출된 책을 割付한 후 번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割付란 필요한 글자부분을 잘라내어 목판에 아교풀로 비풀어지지 않도록 반듯하게 붙이는 작업을 말하며 이 일은 割付唱准이 담당하였다. 할부창준은 ‘纂輯校正時員役工匠等別單’에는 金鎮漢等 2인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監印廳員役工匠等別單’ 등의 명단에는 分紙唱准만 기재되어 있다. 또 ‘監印廳別單’의 경우 張文燁과 朴文周가 分紙兼校正唱准<sup>66)</sup>으로 표기되어있는 것을 볼 때, 分紙唱准과 割付唱准의 역할이 비슷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부창준 등은 특별히 솜씨가 좋은 善手唱准들을 선별하여 작업하게 하였으나 자획의 오류와 할부의 橫斜를 더 상세히 살피기 위해 敎서관관원과 李德懋, 柳得恭, 朴齊家, 徐理修 등의 內閣檢書官을 매일 1명씩 사진하여 창준의 업무를 살펴 보게 하였다.<sup>67)</sup> 이 외에도 목판공정에 참여한 공장으로는 補字官, 冊色書吏, 小木匠 및 木手が 있으며 이들은 모두 5월 1일부터 부역하였다.<sup>68)</sup>

목판에 글자를 새기기 위해서는 먼저 목판에 새길 刻本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寫字官이 正書 하거나 활자로 인출하는 방법, 또는 책을 그대로 할부하여 번각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刻本の 정서를 담당하는 寫字官은 책이나 문서 등의 草本을 마지막 단계에서 正書하거나 책의 제목을 書寫하는 자로서 刻本의 경우 보통 하루에 2~3장을 정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자관의 작업속도로 「국조보감」의 刻本을 정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조대 「국조보감」의 刻本은 正書가 아닌 활자인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각수들의 刻本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 刻本을 인출하기 위해 활자인출

矣” 등, 『승정원일기』, 정조 6년 6월 8일. “上曰 多數匠人 住接於何處乎 昌聖曰 刻手中 僧人 分接於摠戎廳 故敎書館 足可容接矣.”

66) 위의 책, 348쪽~352쪽. 여기서 말하는 分紙兼校正唱准은 校正都刻手의 기능에 비취 볼 때 誤字를 잘라내고 수정된 글자를 붙여 교정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67) 위의 책, 103쪽, 4월 26일. “昌聖等曰 列祖寶鑑印出時 字割之訛誤 割付之橫斜 不可不詳審 而亦難只委於唱准輩 敎書館官員一人 及內閣檢書官中一人 使之逐日仕進 以爲看檢之地 何如上日 依爲之.”

68) 위의 책, 269쪽. 『監印廳移文』.

인력들은 4월 29일부터 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참여한 공장들은, 활자가 부족할 경우 필요한 글자를 목활자로 새기는 小木匠<sup>69)</sup>을 비롯하여 唱准과 冊色書吏, 守櫪諸員 및 均字匠, 印出匠, 見張使令, 刻手, 泐匠이 참여하였다.<sup>70)</sup>

『국조보감』은 목판과 활자를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참여한 工匠의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소속 또한 교서관 외에 훈련도감, 상의원, 공조, 금의영 등 다양하다. 寫字官, 補字官, 唱准, 守櫪諸員, 上板諸員, 粧冊諸員, 均字匠, 印出匠 등 서적의 인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장들은 모두 교서관소속 장인이다. 그런데 인출장 10명 중 교서관 소속 6명을 제외한 4명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私手인 점이 눈에 띈다. 현종대의 경우도 12명의 인출장 중 절반이 교서관 소속과 사수였다. 이는 당시 坊刻本이나 문집 등 개인적인 서적간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목판공정과 활자공정에 참여한 공장들의 종류와 그 소속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71)</sup>

<표 2> 「국조보감」 장인종류 및 소속과 인원

종류	寫字官	補字官	昌准	書員	守藏諸員	上板諸員	粧冊諸員	刻手	均字匠	印出匠	小木匠	木手	推造匠	多會匠	除刻匠	豆錫匠	漆匠	朴排匠	針線婢
소속	校書館	校書館	校書館	校書館	校書館	校書館	校書館	校書館外, 私手	校書館	校書館外, 私手	校書館, 私手	私手	私手	訓鍊都監	私手	尙衣院	工曹	禁衛營	工曹, 尙衣院
총인원	2	4	10	1	8	2	11	1 4 4	8	10	2	2	2	2	4	2	1	1	2

69) 현종대 「국조보감감인청의궤」, 甘結. 戊申 7月 22日 “國朝寶鑑開印 活字不足 刻出時 小木匠所用雜物 後錄發甘爲去乎 依後錄星火進排事.”

70) 서울대학교 편, 앞의 책, 268쪽. 「監印廳移文」.

71) 활자인쇄 장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옥영정, “조선시대 인쇄관청의 活字印刷 匠人 연구,” 『한국문화』, 47(2009. 9) 참조.

위의 표를 살펴보면, 「국조보감」에 참여한 공장은 모두 19種 218명으로 대부분 교서관 소속이다. 그런데 사수로 활동한 刻手와 小木匠, 木手, 推造匠, 除刻匠 및 印出匠은 모두 목판간인 관련 공장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부역 외에 주로 私家나 坊刻本 간인에 참여하여 생계를 유지했으며 都刻手를 중심으로 일정한 팀을 이루어 활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 3.1.2 임금과 처우

조선은 노동자를 크게 범주화시켜서 범주별로 적용되는 임금지급표준을 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임금경제를 운영하였다. 공장의 경우, 직종별로 구분하여 상이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營建사업과 같은 특별한 사업에 한정되며, 일반적으로는 各色工匠 등으로 통칭하여 동일한 임금지급표준을 적용하였다.<sup>72)</sup> 위의 「국조보감」 간인에 참여한 장인들 역시 소속이나 기술력, 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各樣工匠’으로 통칭하여 각각 매달 料米 9斗와 함께 布 3疋 代錢 6兩씩을 받았는데 쌀은 戶曹에서, 錢은 兵曹에서 지급하였다.<sup>73)</sup>

이것은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일 米 3升과 2錢의 일당을 받은 것으로, 당시 평균 쌀 1石이 4兩이라는 기준<sup>74)</sup>으로 금액을 환산하면 이들의 일당은 1兩 4錢이 된다. 使喚軍의 每朔料가 米 6斗와 布 2疋 代錢 4兩씩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숙련된 기술을 가진 공장들의 임금이 33% 이상 더 높다. 지방에서 올라온 각수들의 경우, 板刻을 마친 후 고향으로 돌아갈 때 소요되는 일자를 크게 近道는 2일, 中道는 4일, 遠道는 6일로 나누어 일당 糧米 3升과 2錢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犒酒와 함께 지급하여 處遇하였다.

3년 뒤인 1785년에 진행된 「宮園儀」 간행에 참여한 공장들의 每朔料가 米 9斗와 布 2疋<sup>75)</sup>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국조보감」 공장들이 한 달에 2兩씩을

72) 박이택, “서울의 숙련 및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1600~1909 - 「儀軌」 자료를 중심으로 -”,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45~46쪽.

73) 서울대학교 편, 위의 책, 『工匠料式』, 377쪽.

74) 박이택, 위의 책, 54쪽.

더 받은 것으로, 같은 서적 간행의 일을 했음에도 임금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 華城城役에 참여했던 石手의 경우, 매일 米 6升와 錢 5分을 받은 반면, 목수와 조각장은 4錢 2分을 받았다.<sup>75)</sup>

현종대 『국조보감』 간인시에도 정조대 『국조보감』의 예를 그대로 적용시켜 ‘各樣工匠’에게 매달 米 9斗와 木 3疋을 지급하고 외방 각수가 回還時 近道, 中道, 遠道로 나누어 일당기준으로 일자를 2일, 4일, 6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판각을 한 각수들에게 ‘刊板工錢’을 별도로 지급한 것이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冊板 1張에 1兩 5錢을 지급하되 註板의 경우는 그 배인 3兩을 지급하였다. 또 글자가 1판이 차지 않을 경우에는 매 行당 7分 5厘씩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곧 글자의 수를 기준으로 1행에 7分 5厘를 적용시킨 것이다. 그리고 校正刻手의 경우는 工錢으로 매일 7錢을 지급하였다.<sup>76)</sup> 순종대 『국조보감』 간인에 참여한 諸色工匠들의 경우에는 매일 1圓을 지급하였는데 書寫使喚의 30錢과 비교하면 33% 이상을 더 받았으므로 정조대의 임금기준에 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조대와 현종대 『국조보감』 간인에 참여한 공장들도 관원들과 마찬가지로 책의 간행이 완료된 뒤 해당 曹로 하여금 후한 방향으로 시상하도록 하였다. 외방각수들의 경우에도 해당 道에 각수의 명단과 함께 각별히 후하게 시상하도록 하고 시상 후에는 그 내용을 보고하게 하였다. 시상의 내역은 현종대에 ‘상으로 木 2疋과 布 1疋을 담당 읍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다’는 경기도 감찰사의 보고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sup>77)</sup> 이로 비추어 다른 지방각수들도 이와 비슷하게 약간의 물품을 상으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볼 때, 당시 기본적으로 공역에 함께 참여한 모든 기술직 공장들의

75) 조계영, “朝鮮後期 『宮園儀』의 刊印과 粧幀,” 『서지학연구』 35집(2006. 12), 공장 月料布 참조.

76) 『화성성역의궤』 「朔下式例」.

77) 국조보감이 10行18字이고 1張은 2쪽이므로 1장당 20행이 된다. 결국 1行당 7分 5리로 20行을 계산하면 1량 5전이 산출된다. 이러한 기준이 현종대에 처음 적용된 것인지 아니면 정조대에도 있었으나 기록하지 않은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78) 『국조보감의궤』 「賞典秩」, 「來關」.

임금은 동일하게 책정되었으나 같은 시기, 같은 서적 간행공장이라 하더라도 그 책의 중요도나 노동의 강도, 공인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 등 임금을 유동적으로 적용시켰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각수의 경우 글자 량을 기준으로 工價를 지불하여 다른 장인보다 더 정확한 기준으로 책정했음이 확인된다. 또한 현종대와 순종대의 임금은 정조대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외방각수에게 지급한 回鄉시의 금액도 물가의 반영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였다. 이들의 임금은 전체적으로 미숙련 노동자보다 33% 이상 높은 금액이 책정되었으나 당시 苦役價가 良役價 1疋의 배인 2疋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력에 비해 높은 처우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3.2 刊印經費의 내역과 所用物品

### 3.2.1 간인경비의 내역

책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종이와 목판을 비롯한 여러 물품이 소요되며<sup>79)</sup> 이에 따른 많은 경비가 지출된다. 정조대의 경우, 「국조보감」 간행에 들어가는 冊板과 종이 등 주요 물품은 기본적으로 貢人에게 조달을 받았으므로 소비되는 물품비는 모두 市價보다 2~3배가 더 비싼 貢價<sup>80)</sup>로 戶曹에서 지급하였다. 이러한 경비문제와 공역의 편의를 위해 지방에 분담시킬 경우 목판 마련과 인출은 모두 백성들의 부역으로 분담되어 많은 폐해가 발생하였다.<sup>81)</sup> 이러한 이유로 정조는 폐를 막고자 「국조보감」 간행을 지방에 분담시키지 말고 서울에서 진행할 것을 명하였다.

79) 책의 간행과 장황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항목은 조계영, 위의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80) 工價는 공물제도가 정비된 1750년경부터 물가가 안정된 19세기 중반까지 매우 안정적이었다. 시가에 비해 공가가 2~3배 높은 이유는 공인의 조달, 납부 비용을 보상하고 시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폐단 없이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목적과 공인의 무상으로 각종 역을 부담하는 보상금을 포함하여 책정했기 때문이다(이현창·조영준, “조선후기 貢價의 체계와 추이,” 『韓國史研究』 142집, 한국사연구회, 2008).

81) 이러한 폐해는 「선조실록」 권7, 6년 9월 辛丑, 「광해군일기」 권28, 2년 4월 癸巳 등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석규, 위의 논문 참조.

간행경비를 살펴보면, 영의정 徐命善은 私家에서 간행할 경우 木板이 活字에 비해 3~5배의 경비가 더 소요된다고 했다. 호조판서 金華鎮도 활자와 목판은 서로 차이가 많지만 전체물력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목판과 활자를 떠나서 「국조보감」 간행에 들어갈 총 경비는 대략 8만 여량으로 추산하였다. 檢校直提學 鄭民始 또한 김화진과 같이 鑄字가 목판과 비교하면 현격히 낮으나 전체 경비를 계산하면 목판과 동일하므로 印板을 1,500장으로 예상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공역의 비용을 10,000량으로 추산하였다. 이 당시 초가 5間 한 채價를 40량으로, 쌀 한 섬價를 4량으로 기준하였을 때 8만량은 초가 2,000채와 쌀 20,000섬을 살 수 있는 많은 비용이다. 여기에 비해 판각비용은 전체 예상액인 80,000량의 10%에 해당한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목활자가 아닌 鑄字인출과 목각인출의 전체경비는 차이가 없었으나 工役에 있어서는 목판이 활자에 비해 훨씬 복잡한 작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간행에 들어가는 총 경비를 산출하기 위해 먼저 1~2장을 할부하여 시험하였다. 또 간행에 들어가는 경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첫 번째, 감인청 당상인 심염조와 計士가 全帙의 刻本을 새로 正書하는데 드는 비용을 179량으로 산출하고 ‘선묘·숙묘보감’을 제외한 나머지 1,000餘張을 활자로 인출할 경우 비용을 91량으로 산출하였다. 활자인출이 정서에 비해 절반의 비용과 함께 노력과 시간도 절약되면서 글자체도 더 좋은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正書 대신 ‘선묘·숙묘보감’은 前朝에 活印한 책을 할부하여 번각하고 나머지 刻本은 활자인출 방법을 사용하였다.<sup>82)</sup>

두 번째로 도서관에 보관된 自作 舊板의 落帙板 중 다시 쓸 만한 200여립을 찾아서 재활용하여 경비를 절감하였다. 이 외에 冊紙는 白綿紙보다 값이 싼 白紙를 사용하고 도서관에 많은 재고 冊紙를 장흥고의 여러 종이와 바꾸어 사용하고 하였다. 하지만 백면지 공인이 오랫동안 백면지가 쓰이지 않아 많은 在庫가 쌓여있는 것을 근심하고 있고, 도서관의 종이는 현재 부족한 經書를 인출할 때에 사용해야 하므로 공인을 위해 재고 백면지를 사용하게 하였다.<sup>83)</sup>

82) 『승정원일기』 정조 6년 4월 26일(임진). “上曰 宣肅兩廟寶鑑 既有活印原本 以此反刻 其餘則活印各一張 卽爲反刻 以爲省費云 果如何 民始曰 若是取用 則果爲省費之效矣.”

83) 서울대학교 편, 위의 책, 99쪽~108쪽.

하지만 실제 소요된 경비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비교적 상세히 기록된 순종대 「국조보감」 간행 사용 경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순종대 「국조보감」을 간행하는데 지급된 총 경비는 모두 5,585圓 26錢 7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것은 冊紙로, 1束價가 1圓인 壯紙 1,048束이 소요되어 1,048환이 지출되었으며 1束價 25錢인 白紙 5,606束이 소요되어 1,401환 50전이 지출되었다. 冊紙 구입비만 모두 2,449환 50전이 지출되었으며 이 액수는 전체 비용의 45% 이상을 차지한 금액이다. 印出工費로는 846환 13전 7리가 지출되었으며 이 외에 각종 工匠費 명목으로 294환 56전이, 儀軌費 296환 78전이 지출되었다. 그리고 經板閣에 소장되어 있는 原板 2,138판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출한 비용 27圓 48錢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되었으며 이 경비는 모두 內藏院에서 지급하였다.<sup>84)</sup> 위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순종대 「국조보감」 간행경비 내역

경비 항목		금액	비율
冊紙	壯紙	1,048圓	45% (2,449圓 50錢)
	白紙	1,401圓 50錢	
鑄刻印出所費		846圓 13錢 7釐	15%
粧績費		295圓 80錢	5%
各項工匠費		294圓 56錢	5%
書寫使喚日費 및 紫油炭費		198圓	3.5%
鑄字 分類費		150圓	2.6%
鑄字 運搬費		50圓	0.9%
儀軌費		296圓 78錢	5%
造成費	冊楨	171圓 20錢	10% (548圓 19錢)
	編籤	20圓 30錢	
	袞屬	356圓 69錢	
物品費	鑄字所	36圓 48錢	2% (112圓 3錢)
	刻字所	48圓 34錢	
	原板印出所	27圓 48錢	
기타 奉安架子費 등			6%
총 비용		5,585圓 26錢 7釐	100%

84) 장서각소장, 순종대 「국조보감감인소의궤」, 13~14쪽, 51쪽, 59~62쪽.

위의 표와 같이, 총 경비 중 종이 구입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인출비와 기타 장인의 임금이 20%이고 물품비가 2%인 점을 감안할 때, 당시 종이의 높은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건비의 수준을 짐작 할 수 있다. 종이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壯紙 1束價는 1圓이고 白紙 1束價는 25錢으로 서로 4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조대의 경우, 장지보다 비싼 貼冊紙와 白綿紙를 다수 사용하였으므로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종이의 비율은 더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10여건의 양에 비해 의례비가 높게 책정된 것은 위에서 살펴듯이 인출에 비해 배가 높은 寫字官의 正書로 작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모두 포함시킨 「국조보감」 한 秩에 들어가는 原價는 과연 얼마일까? 정조대부터 「국조보감」을 廣布하기 위하여 원하는 관원과 팔도의 백성들에게 한 秩에 들어가는 종지와 장황 등의 물품비만을 받고 인출해주겠다는 내용의 關을 각 도에 보냈는데 여기에 기록된 종지와 금액을 통해 한 질의 원가를 짐작할 수 있다. 문서에 표기된 한 질의 원가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정조대~순종대 「국조보감」 1秩價

時期	新舊本 全帙 인출시	新本 인출시	舊本/新本冊數
正祖		冊紙 50卷 蜜墨, 粧績費 5兩	/ 22冊
憲宗	冊紙 60卷 1張 錢 7兩 2錢 8分	冊紙 10卷 錢 1兩 1錢 2分	22冊 / 4冊
純宗	冊紙 69束 19張 粧績費 4圓 90錢	冊紙 14束 7張 粧績費 1圓 20錢	26冊 / 2冊

위의 표로 한 질의 경비를 살펴보면, 먼저 정조대에는 22책으로 冊紙 50卷<sup>85)</sup>과 蜜墨 및 粧績費 5兩이 소비되었으며 헌종대는 3朝 寶鑑 4冊이 작성됨에 따라 종이는 10권 1장, 돈은 1량 1전 2푼이 추가되었는데 물가의 상승으로 정조대에 비해 1량 1전 5푼이 올라 모두 7량 2전 8푼을 받았다. 순종대에는 2朝 寶鑑 2책이

85) 22책에 들어가는 종이는 44권 15장이었다. 그러므로 50권에는 工費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추가됨에 따라 종이 14束 7張과 장황비 1환 20전이 추가되어 한 帙價는 冊紙 69束 19張과 粧績費 4圓 90錢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86)</sup>

### 3.2.2 印出件數 및 所用物品

정조대 「국조보감」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정조의 명에 따라 인출종이의 종류와 건수가 결정되었다. 먼저 간행이 시작되기 전인 4월 29일에 進上件은 貼冊紙 3건, 卷冊紙 5건, 白綿紙 12건, 白紙 10건 모두 30건을, 頒賜件은 백지로 50건을 인출하도록 명하였다. 다음날인 4월 30일은 5곳의 史庫 봉안 건수를 추가하고 별편은 종이 각 품별로 3건씩 9건의 인출수를 명하였다.<sup>87)</sup> 이 후 한창 인출이 진행 중인 7월 14일 다시 진상건으로 백면지와 백지 각 10건씩 20건을 추가로 명하였으며<sup>88)</sup> 마지막으로 모든 간행 작업이 마무리되어가는 때인 11월 11일 간 인건수가 태반이 부족하여 案冊 1건은 첩책지, 預差件 2건은 권책지, 閣臣件 1건, 參贊官件 1건, 玉堂件 2건, 史臣件 3건은 모두 백지로, 반사건 15건은 백면지, 5건은 백지로 하여 모두 30건을 추가로 인출할 것을 下命하였다.<sup>89)</sup> 위의 인출 건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6) 서울대학교, 위의 책 「監印廳 移文」 267~268쪽, 현종대 「국조보감감인청의궤」, 「移文」, 「국조보감감인소의궤」, 「通牒」 56~57쪽.

87) 위의 책, 106쪽, 4월 29일. “監印廳郎廳 以大臣意啓曰 國朝寶鑑 今將始役矣 進上件及頒賜件 定其件數 然後所入紙地 方可磨鍊 各以幾件舉行乎 敢稟 傳曰 進上件 則貼冊紙三件 卷冊紙五件 白綿紙十二件 白紙十件 合三十件爲之 頒賜五十件 皆以白紙爲之,” 108쪽. 4월 30일 “昌聖曰 進上件及頒賜件 已知定數 而五史庫所藏冊子 入於三十件中乎 三十件外 當加印乎 上曰 以頒賜件爲之 可也 昌聖曰, 別編 雖不刊布 進上件 則皆爲同印乎 上曰 每品 各印三件以入 可也.”

88) 위의 책, 117쪽, 7월 14일. “傳曰 白綿紙件 白紙件 各十件 以進上件加印事 分付戶曹及監印廳”. 「국조보감감인청의궤」, 「監印廳實入」에는 종묘봉안 1건, 진상건 50건, 반사건 50건, 사고봉안 5건 모두 106건의 실일 내용만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지막 추가건수는 기록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조실록」 6년 11월 26일(기미)에는 85명에게 하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반사건과 차이를 보인다.

89) 위의 책, 141~142쪽, 11월 11일.

<표 5> 정조대 「국조보감」 종이별 인출건수

인출항목	책수	紙品	인출건수	비고	
宗廟 奉安件	31冊	貼冊紙	1	本編(68編)+別編(7編)	
史庫 奉安件	24冊	白紙	5	本編 22冊+別編 2冊	
進上件	24冊	貼冊紙	3	本編 22冊+別編 2冊	
		卷冊紙	3		
		白綿紙	3		
		白紙	3		
	22冊	卷冊紙	2	本編 22冊	
		白綿紙	19		
白紙		17			
頒賜件	22冊	白綿紙	15	本編 22冊	
		白紙	55		
案冊	?	貼冊紙	1		
預差件	22冊?	卷冊紙	2	本編 22冊?	
玉堂件			2		
閣臣件		白紙			1
參贊官件					1
史臣件					3
총 인출 건수			본편136건	68編 22冊	
			별편 18건	7編 2冊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국조보감」은 巨帙의 책일 뿐 아니라 많은 양을 인출하였기 때문에 특히 白紙 등의 종이와 冊板의 소요량이 많았다. 책판은 대부분 自作板을 사용하였는데 정조대의 경우 ‘實入秩’의 내역을 살펴보면 自作판 965장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純祖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sup>90)</sup> 「芸閣冊都錄」에는 各에 소장되어 있는 「국조보감」 책판은 1,608板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책판은 작성연도와 板數를 봤을 때 정조대에 刻板된 것으로 짐작되는데 의뢰의 기록과는 그 수량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정조대 「국조보감」 본편의 장수가 1,700장이 넘는 것으로 미루어, 이것은 立과 板의 單位 차이 혹은 의뢰의 기록 오류일 것으로

90) 方孝順, “「芸閣冊都錄」을 통해본 校書館 藏書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8집(서지학회, 1992) 참조.

로 추정된다. 현종대에는 자작판 211호 半이 實入되었는데 순종대에 經板閣에 소장되어 있던 原板은 모두 2,138판이었다. 마지막으로 순종대에는 자작판 10호 이 實入되었는데 총 2,328장 중 목판본은 1,863장이다.<sup>91)</sup> 하지만 현재 규장각에는 1,216판만이 소장되어 있다.

#### 4. 결 언

『국조보감』은 編年體 史書로서 역대 왕의 聖德만을 기록하여 先朝를 揄揚하고 후세 嗣王에게 鑑戒로 삼는데 목적을 두고 편찬 한 책이다.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90권 28책으로 완성시켰는데, 특히 정조 6년(1782)에 13조 보감을 편찬하여 기존의 6조 보감과 합편하여 모두 本編 68卷 22冊과 別編 7卷 2冊으로 편간하였다. 이로써 후대 현종대와 순종대에 보감편간의 典範이 되었으며 의궤를 작성하여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의궤 기록을 통해 당시 간행과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조보감』을 인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논의했던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판종으로, 木板開刊으로 결정되었는데 본편의 刻本은 正書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활자로 인출한 후 목판에 번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 『宣廟寶鑑』과 『肅廟寶鑑』은 영조대에 간행한 책을 그대로 할부번각하기로 하였으며 이와는 달리 반사하지 않을 별편은 활자로 인출하기로 하였다. 특히 前朝의 세 寶鑑이 모두 활자본인 前例를 따르지 않고 木板을 번각하여 繼述의 뜻을 후세에 영구히 전하고자 했던 정조의 바람이 판종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둘째, 간행 전반의 진행과 감독을 담당할 감인청 인원으로는 찬집에 직접 참여하여 이 책에 깊은 지식이 있는 인물 당상 3인과 낭청 2인을 임명하였다. 또

91) 서울대학교 편, 앞의 책 『監印廳實入秩』, 283쪽. 현종대 「국조보감감인청의궤」 「實入」, 순종대 「국조보감감인소의궤」 「實入」, 43쪽, 「國朝寶鑑全編卷帙」, 29쪽.

간인작업을 속히 완료시키기 위해 八道에 關을 보내 외방각수를 上京하도록 하였다. 또 간인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기 위해 該曹에 甘結을 보내 요청한 목록대로 조달하게 하였으며 간인 건수는 모두 임금의 명에 의해 결정되었다.

셋째, 목판간인은 4월 29일부터 刻本 인출작업을 시작으로 각판작업은 144명의 각수가 참여한 가운데 7월 4일에 대부분 완료 되었다. 인출은 10명의 인출장이 10월 25일 경에 마무리 지어 11월 중으로 모든 간행 작업이 완료되었다.

넷째, 여기에 부여된 각수, 인출장, 수장제원, 균자장, 창준 등 19種 218명의 공장들은 하루 품삯 米 3升과 2錢을 받고 부여하였다. 가장 많은 수가 동원된 각수 144명 중 승각수 72명은 대부분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상경한 자들로, 禁僧法으로 인해 다른 장인들과 분리되어 성 밖 摠戎廳에서 작업하였다. 정조대 총 간인경비는 8만량 이상이며 이 중 10%의 금액이 印板 工役費로 소용되었다. 그리고 순종대 비용 내역을 비취볼 때 종이 구입비가 총 비용의 50%에 해당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22책 한 질의 原價로 冊紙 50卷과 蜜墨, 粧縑費 5兩이 소요되었다.

이렇듯 정조는 많은 시간과 물력이 소요되는 『국조보감』을 1년 4개월여에 걸쳐 완성시켰으며 편간 진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8만 여량이 넘는 경비와 인력을 들여서 시간의 단축을 재촉해가면서까지 이 책을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조는 즉위년인 1776년 그의 부친인 사도세자에게 ‘莊獻世子’라는 존호를 올리고 2년 뒤인 1778년에는 垂恩廟를 景慕宮으로 개칭하여 부모에 대한 추송절차를 본격화 하였다. 또 『국조보감』의 간행이 완료된 1년 후에는 경모궁에게 ‘綏德敦慶’이란 존호를 더하였다.<sup>92)</sup> 곧 『국조보감』은 그의 숙원사업인 사도세자의 복권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기는 또 규장각의 기능이 활성화 되어 그의 御製가 본격적으로 편찬되고 있는 때이기도 하다. 奎朝의 『국조보감』은 영조가 완성하고자 했으나 여력이 부족하여 시도하지 못했던 사업이다. 그래서 정조는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시기에 繼志述事의 일환으로 이 책을 완성시킴으로써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대대적으로 밝히고 역대왕의 공덕을 揄揚하여 위협받고 있는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92)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2007), 95~99쪽.

이 책을 자신의 본격적인 문화사업의 한 起點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는 판본을 후대에 영세토록 전하고자 비용을 따지지 않고 목판으로 제작하였으며 이 책의 의례를 특별히 신경 써서 작성할 것을 신칙한 후 전례를 깨고 內入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책을 더 많은 백성에게 廣布하기 위해 관원들과 서울, 지방을 대상으로 원하는 자는 모두 책지와 재료비만을 받고 간행해주도록 하였다. 자신의 목적을 되도록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특히 간행이 끝난 후 종묘에 親上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庭試·別試·武科殿試 등의 慶試를 設行하고 庭試는 春塘臺에서 親臨하되 또 다른 경사가 있더라도 合慶하여 設行하지는 말 것을 당부<sup>93)</sup>한 사실에서도 정조가 이 책을 얼마나 각별하게 여겼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정조대 「국조보감」의 간행절차와 비용, 참여 공장들에 대한 운용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이 책이 갖는 역사적 가치와 당시 왕실서적 간행의 한 단면을 조명해 보았다. 제한된 지면과 자료의 부족으로 「국조보감」분석에만 국한하여, 다른 왕실 서적 간행과 함께 私家의 문집 간행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原典資料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국조보감」. 민족문화추진회, 1996.

서울대 규장각 편. 「國朝寶鑑監印所儀軌」 영인본. 1997.

장서각 소장. 「國朝寶鑑」.

장서각 소장. 「國朝寶鑑監印所儀軌」 필사본. 1909. 소장번호 K2-3683.

93) 「승정원일기」 정조 6년 10월 25일, 12월 3일. 서울대학교 편, 앞의 책, 10월 10일. 125쪽 “上曰 寶鑑既已編成 不可經年 必欲趁歲前進書矣 寶鑑告成 則慶科設行 自有前例 其前雖有邦慶 事件各異 不必合慶設行矣” 등.

장서각 소장. 『國朝寶鑑監印廳儀軌』 필사본. 1848. 소장번호 K2-3686.

장서각 소장. 『華城城役儀軌』 整理字本. 1800. 소장번호 K2-3604.

## 2. 研究論著

### [單行本]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2007.

박성훈. 『單位語辭典』. 민중서림, 1998.

이영훈.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研究論文]

김남기. “규장각 소장 책판의 현황과 가치.” 『고전적』 2집(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2006).

김문식. “정조대 경학문헌의 특징.” 『한국학보』 26집(일지사, 2000).

김상호. “朝鮮時代 刻手の 石刻 活動考.” 『서지학연구』 41집(2008).

김성수·이승철. “校書館의 機能과 組織 및 印刷活動.” 『조선시대 인쇄출판 기관의 변천과 발달』(청주고인쇄박물관, 2008).

金貞美. “朝鮮時代 撰集廳·纂修廳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학대학원. 2009.

남권희. “韓國의 木板印刷 研究.” 『고인쇄문화』 8집(청주고인쇄박물관, 2001).

박상진. “목판 및 종이의 재질 분석.” 『국학연구』 2집(2003).

박상진. “팔만대장경의 판의 수종과 보존현황.” 『산림』 380집(산림종합중앙회, 1997).

박이택. “서울의 숙련 및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1600~1909 -『儀軌』 자료를 중심으로-.”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박현욱. “조선 정조조 검서관의 역할.” 『서지학연구』 20집(서지학회, 2000).

方孝順. “芸閣冊都錄을 통해본 校書館 藏書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8집(서지학회, 1992).

- 설석규. “조선시대 유교목판 제작 배경과 그 의미.” 『국학연구』 6집(2005).
- 신승운. “『弘齋全書』와 『羣書標記』의 編纂과 刊行에 關한 研究.” 『서지학연구』 22집(2001).
- 옥영정. “시강원의 서적편찬과 간행기록 고찰.” 『서지학연구』 18집(1999).
- 옥영정. “조선시대 인쇄관청의 活字印刷 匠人 연구.” 『한국문화』 47집(2009).
- 유봉학. “정조시대 사상적 갈등과 문화의 추이.” 『泰東古典研究』 21집(2005).
- 尹炳泰. “韓國의 冊版目錄.” 『古印刷文化』 7, 鄭亨愚·尹炳泰. 『韓國冊版目錄總覽』. 보경문화사, 1995.
- 이선엽·김도현. “과거제도에 관한 비판적 성찰 -조선의 문과시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21집(2007).
- 李元淳. 『<국조보감>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0.
- 이현창·조영준. “조선후기 貢價의 체계와 추이.” 『韓國史研究』 142집(한국사연구회, 2008).
- 정선영. “백면지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1집(2008).
- 정선영. “조선시대 책지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창간호(서지학회, 1986).
- 정연식. “17, 18세기 양역균일화 정책의 추이.” 『한국사론』 13집(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5).
- 정옥자. “정조의 사회통합사상.” 『한국학보』 24집(1998).
- 鄭亨愚. “國朝寶鑑의 編撰經緯.” 『동방학지』 33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2).
- 趙啓榮. “朝鮮後期 『宮園儀』의 刊印과 粧績.” 『서지학연구』 35집(2006).
- 조계영. “조선후기 왕실서책 장황시의 도침에 관한 고찰.” 『고문서연구』(2007).
- 趙啓榮. “조선왕실 봉안 서책의 장황과 보존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6.

### 3. 電子資料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http://sjw.history.go.kr>>.

書誌學研究 第44輯(2009. 12)

서울대학교 규장각: <<http://e-kyujanggak.snu.ac.kr/index.jsp>>.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전 전자정보: <<http://lib.aks.ac.kr/DLiWeb2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lib.aks.ac.kr/Web>>.